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59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채현일 · 서미화 · 김태선
김정호 · 주철현 · 이연희
이원택 · 윤후덕 · 김기표
이재관 · 허성무 · 임미애
신정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검찰·형사사법 제도 운용, 국가 법체계 정비와 국제소송 대응, 출입국·이민관리, 교정,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국가 법질서 유지와 관련된 폭넓은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현재 정원이 34,574명인 대규모 정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검사 출신의 장관과 차관이 중심이 되어 조직이 운영된 실정임.

그러나 범죄예방정책·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되면서 각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됨에 따라서 교정청, 이민청 등의 설립을 통해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정책 수요에 기민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자는 논의가 계속되었고, 법무부가 검사 업무 중심의 조직에서 보다 균형 잡힌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어 왔음.

이에 법무부가 타 부처의 규모에 비해 10배에서 최대 40배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임을 감안하여 단수 차관제를 복수 차관제로 변경하여 조직 규모와 업무 범위에 걸맞게 정책 조정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교정에 관한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며, 날로 중요성이 증대하는 출입국 및 이민관리 업무는 법무부 내 정무직 본부장을 두어 책임 있게 수행하게 하는 등 법무부 조직체계를 대폭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35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를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검사사무·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를 “검사사무·교정·범죄예방·인권옹호·출입국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무부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③ 법무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⑥ 교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둔다.

⑦ 교정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교정” 관련 부분과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행형에 관한 사무는 교정청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행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교정청장이 승계하는 행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법무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교정청장의 행위 또는 교정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교정청장이 승계하는 행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법무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정청”을, “법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정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신설>

<신설>

수 있다.

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⑥ 교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둔다.

⑦ 교정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